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4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2. 1 .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2007년 5월 11일자 「지방자치법」 및 2007년 10월 4일자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과 2002년 3월 25일 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오자를 정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을 수정 (안 제1조, 제5조, 제8조, 제9조, 제11조, 제12조)
- 나. 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수정(안 제5조)
- 다. 기존 조문의 표기 중 오자를 정정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, 지방자치법 시행령, 공기업법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       호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제36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”영“이라 한다)제19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”영“이라 한다) 제52조의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2 제2호 중 “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”를 “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”로, “법 제108조 및 제111조 ”를 “법 제117조 및 제120조”로, 같은항 제3호 중 “법 제137조 ”를 “법 제146조”로, 같은항 제4호 중 “법 제95조 ”를 “법 제104조”로, 같은항 제5호 중 “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4항 중 “법 제36조제5항”을 “법 제41조 제5항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목 “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”을 “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”으로, 같은조 제1항 중 “위원회의 의결”을 “위원회의 의결”로, 같은조 제3항 중 “법 제36조제4항”을 “법 제41조 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영 제18조제1항”을 “영 제50조 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영 제17조의7”을 “영 제46조”로, “영 제17조의8”을 “영 제47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6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 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 라 한다)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(생략)</b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</p> <p>3. 영등포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</p> <p>4.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영등포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</p> <p>5.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·공단외의 출자·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영등포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-----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52조의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b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----- -----법 제117조 및 제120조-----</p> <p>3. ----- 법 제146조 ----- -----</p> <p>4. 법 제104조----- ----- -----.</p> <p>5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의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1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제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, 영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징계) -----  영 제46조의-----  -----, 영  제47조의-----  -----  -----.</p>